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2년도 예산편성 및 '21년도 집행관리 계획

2021. 1.



경 부

목 차

I. 개 요	1
II. 예산편성	2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2
2.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3
3.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및 비율	5
4. 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원인자 부담	8
5. 사업계획 제출기한 및 예산심의 절차	8
6. 사업계획 작성·검토시 확인사항	9
III. 집행 및 결산	11
1.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집행절차	11
2. 보조금 집행점검·관리	20
IV. 향후 추진일정	21
[참고] 관련 서식	22

I. 개요

목적

- '22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제출 절차 등 공지
- '21년 국고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집행관리 계획 공유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목적)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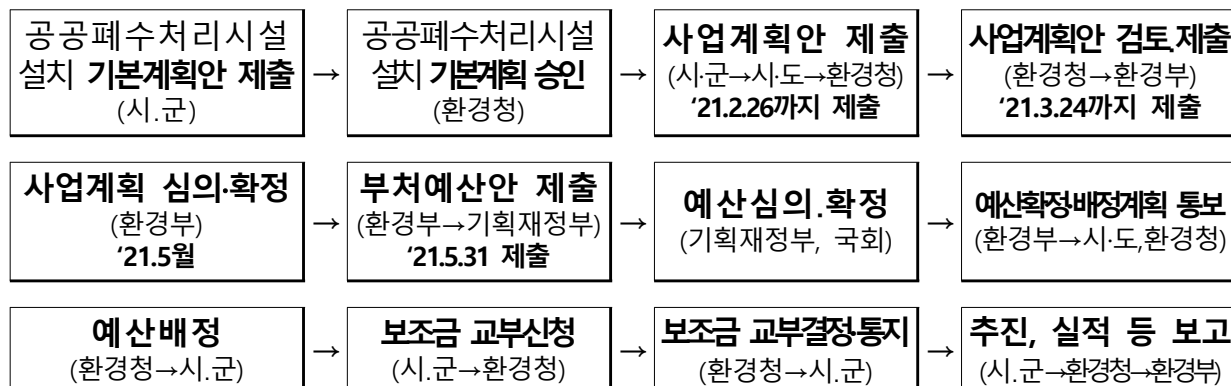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9조, 제69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9조 등

□ 지원방식 및 규모

- (지원방식) 자치단체 보조
- (지원규모)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군에 50~100% 비율로 지원
 - ※ 국고지원율은 "II. 예산편성 / 3.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및 비율" 참조

□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절차 및 일정



※ 시·도는 시·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하여 우선순위 등 제출(민간개발사업자는 시·군 등과 협약체결 후 시·군에서 신청)

II. 예산 편성

- ◇ (기본방향)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조기 착공 가능 사업 등 재정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은 우선 지원,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는 국비감액 및 재정페널티 부과
 - ◇ (신청기간) 시·도에서는 '22년 예산소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21.2.26.까지)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제출자료 선심·제출('21.3.24.까지) → 환경부
-

1.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48조)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기초시설 연계처리를 위한 관로 등의 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인근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관로시설
 - 인근 산업단지 폐수의 연계처리로 인한 증설 또는 고도처리를 위한 시설개량

2.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 '21년도 현재 설치(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연차별 소요계획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
 - '20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경우 '3.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의 감액기준에 따라 감액
 - ※ 환경청에서 감액기준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환경부로 제출
 - 산업단지 조성시기 불투명, 분양·입주실적이 전무한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상추진 사업도 추진상황 면밀 확인 후 지원액 가감 검토

□ 신규사업

-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산업·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기 위한 관로 등의 시설 설치사업
- 산업·농공단지로서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또는 생산공정 변경, 단지 확장 등으로 기존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의 증설사업
 - ※ 단계별 설치시설의 경우 전 단계시설 평균유입률이 80% 이상인 경우 신규반영
- 기타 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생태독성 등 기존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는데 따른 시설 고도화 사업(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에 한함)
-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진단을 받은 시설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시설의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시설에 한하며, 원인자 우선 부담 등 재원부담 방안 제시

□ 제외 대상사업

< 우선대상사업 >

-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사업
 - 원인자 부담으로 설계 완료 또는 실시설계중인 사업 우선 지원
- 산업·농공단지에 인접한 하천 하류에 취·정수장이 위치하는 등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구분 등 고려
- 기존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사업
 - ※ 기존 시설 용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시군내 또는 시군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거나 통합관리 예정인 처리시설

< 제외대상사업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사업은 제외
- 해당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신규사업 제외
 - *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다수인 지자체는 시설별 평균가동률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해당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비용부담 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 제외
 - * 당해년도 비용부담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한 경우에는 반영여부 재검토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단일사업장* 입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100분의75이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100분의8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및 비율

□ 세부기준

○ 사업별 지원 기준

구 분	세 부 지 원 기 준
계속사업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22년 완공예정 : 잔여 보조금의 100% - 2023년 완공예정 : 잔여 보조금의 40% - 2024년 이후 : 잔여 보조금의 30% ※ 상기 지원기준은 준공시점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규사업	○ 신·증설의 경우는 설계비 300백만원 지원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공사착공비 등 일부 지원 가능

※ 상기 지원 기준은 종료사업 미정산 사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미정산 사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 계속사업 감액편성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감 액 비 율
1. '20년도 결산	· 실집행률 50%미만	40%
	· 실집행률 20%미만	60%
	· 실집행률 0%	80% 이상
2. '21년도 사업추진 상황	· 정상추진시	· 1호의 감액대상에서 제외 또는 전단계 적용
	· 사업추진 지연시 (±20%까지)	· 부진사유 지속 등 개선이 없는 경우 추가감액 · 부진해소 노력 등으로 점차 개선 추세에 있는 경우 감액 완화

※ '20년도 집행률 20%미만이고, '21년도 사업추진 상황점검 결과 부진사유가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단지 입주 시기, 폐수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 조치

※ 상기 감액기준은 재정규모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 가능

※ (예시) 총사업비 100억(잔여보조금 80억원)의 '23년 완공예정 사업의 경우: 잔여보고금(80억원)의 40%('21년 완공)인 32억원을 기준금액으로, '20년도 실집행률 20% 미만일 때 $32\text{억원} \times (1 - 0.6) = 12.8\text{억원}$, '21년도 정상추진시 감액비율 전단계 적용하여 $32\text{억원} \times (1 - 0.4) = 19.2\text{억원}$ 으로 산정

○ 종료사업 정산 현황에 따른 감액 기준(최근 5년간 준공사업 기준)

미정산 사업	'22년 감액기준
1개	해당 지자체 신규사업 신청시 사업 우선순위 후순위 조정 ※ 신규사업이 없는 경우 계속사업 20% 감액
2개	해당 지자체 신규사업 신청시 미반영 ※ 신규사업이 없는 경우 계속사업 30% 감액
3개 이상	해당 지자체 신규사업 신청시 미반영 ※ 신규사업이 없는 경우 계속사업 50% 감액

※ 상기 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순위 조정 또는 계속사업의 준공연도별 지원 기준금액에서 우선 감액하되, 재정규모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 조정 가능

국고지원 비율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 : %)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접경지역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50	50	70	30	70	30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범위>

(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①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②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③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①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② 강원도 : 춘천시

(3)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 파주시 군내면의 집단취락지역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 : %)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보조	원인자 등	보조	원인자 등	보조
50	50	70	30	100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12)
충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	제주시(1)	서귀포시 (1)
합 계	24 (17시, 7군)	50 (25시, 25군)	48 (3시, 45군)

※ 비고 : 시·군의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장면적 등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

4. 총사업비 산정기준 및 원인자 부담

총사업비 산정기준

- 계속사업 : 예산편성 첫해의 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
- 신규사업 : '22년도 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 적용

* 별도 첨부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물환경관리”에 게재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를 통해 추가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원인자 부담

- 산업단지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거·학교·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시행
⇒ 추가사업비 부담금 = (표준총사업비 초과분) + (표준총사업비 중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비) 등

5. 사업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 절차

□ 사업계획 제출 기한

- 시·도에서는 관할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의 '21년도 예산소요를 파악하여, '21.2.26일까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민간사업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사업계획을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등 검토 의견과 사업계획서를 '21.3.24일까지 환경부 제출
 - ※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사업 검토 사항

- 신규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되, 예산은 설계비 (300백만원)만 반영하여 신청(필요시 일부 공사비도 반영 가능)
- 입주예정업체의 연도별 입주계획 및 오·폐수발생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를 단계별·계열화하여 설치계획 수립
 -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시설 용량은 오·폐수 발생예상량의 1/4이내로 우선 설치
- 신규사업의 입주계획 검토(입주예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수요검증반 조사결과, 산업단지 조성률 및 업체의 입주의향서 또는 MOU 체결내역 등 입주계획*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산업단지 내 1개사업장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75% 이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총 유입오염부하량의 80% 이상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 원인자부담금 검토·확인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용지, 학교용지, 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공동으로 처리 하되, 설치비용은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

□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검토

- 질소·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태독성 등을 처리하기 위한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최근 3년간 수질 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계속사업은 '21년 및 '22년도 사업추진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신청(집행을 부진 및 이월 방지)
- 국고보조금이 총사업비의 일부만 지원되는 사업은 국고보조금 외의 사업비 확보계획 첨부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최신 개정안)」 참조하여 작성
 -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물환경관리'에 게재

Ⅲ. 집행 및 결산

- ◇ (기본방향) 보조금 집행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
- ◇ (집행률 제고)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간 월별 집행상황 보고 체계 구축(매월 5일까지 지자체 → 환경청 → 환경부 제출)
 - ※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현황 등 분석결과에 따라 사업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예산내역 조정 추진(환경부)

1. 보조금 신청·교부 및 집행절차

- e나라도움에서 내역사업별 예산 및 사업배정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e호조(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경우 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서 **교부신청 전에 내역사업구조화(매핑) 작업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함.
- 아울러, e호조에서 **교부신청할 때 지출 계좌번호를 등록(필수사항)**하게 되어있는데 dBrain에 등록된 지출계좌와 일치하지 않으면 계좌에러가 발생함 ※ dBrain계좌 행정안전부 통해 안내
 - dBrain 또는 e호조 계좌 변경 필요

[e호조 교부 신청 화면]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보조금교부신청조회' (Subsidy Disbursement Search) screen in the '지방재정관리시스템' (Local Finance Management System). The interface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search filters at the top, and a data table. The filters are set to '회계년도: 2017', '부처: 전체', and '지역: 경상/자본'. The table lists various subsidy programs with their respective codes, names, and administrative details.

회계/계정명	보조금사업코드	보조금사업명	자치단체	광역사업명	기초사업명	허합 여부	부처로 전송	수신
[110-00] 일반회계	200807515390300A0004	장애인일자리지원(경기도		지자체합계			
[545-00] 양성평등	201507641330332A0004	생애매우저렴지 원장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707621330334A0003	가족행복드림	경기도		지자체합계			
[545-00] 양성평등	201507641330332A0005	생애매우저렴지 지원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0807515390300A0002	장애인일자리지원(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707621330334A0004	찾아가는 부모교육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507621320321B0002	취약위기가족지원	경기도		지자체합계			
[545-00] 양성평등	201507641330332A0003	생애매우저렴지 구조	경기도		지자체합계			
[545-00] 양성평등	201607621560432A0003	워킹맘워킹대디지원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0807514340302A0002	지역 드림스타트 통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407531330336A0002	시간제보육서비스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0807515390300A0003	장애인일자리지원(경기도		지자체합계			
[545-00] 양성평등	201507641330332A0002	생애매우저렴지 지원	경기도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50751535030980002	공공후견 심판청구	수원시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50751535030980003	공공후견 활동비용	수원시		지자체합계			
[110-00] 일반회계	201307515310302B0005	저소득장애인 진단	수원시		지자체합계			

e나라도움 교부신청 방법

-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보조사업자(사업수행담당자)는 e나라도움의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교부관리-교부신청] 화면에서 교부신청서를 작성

교부대상사업목록 Home > 교부관리 > 교부관리 > 교부신청

사업년도: 2016 사업명:

교부대상사업목록 신청서작성

순번	사업명	보조금 (A)	지자체부담금 (B)	보조금합계 (C=A+B)	교부신청금액 (D)	교부결정금액 (E)	교부미결정액 (F=D-E)	교부잔액 (G=C-D)
1	노사상상협력교육 지원사업	395,120,000	0	395,120,000	0	0	0	395,120,000

- 교부신청서 작성의 [신청개요 탭] 화면에서 신청자정보, 사업기본정보, 총사업비정보, 교부정보를 조회하고 수정·저장을 지원한다.

교부신청서작성

사업년도: 2016 사업명: 노사상상협력교육 지원사업 사업번호: B00710:8000001

신청개요 교부신청정보 신청서제출

신청정보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대표자명	노사발전재단 대표자	전화번호	0212125412
주소			
작성자	강오석	작성일자	
제출자		제출일자	

사업정보

사업목적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용노동 이슈에 관한 이해제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사업내용	대학 중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사업기간	2017-10-02~2017-10-31	사업장소	노사발전재단 대회의실
사업대상	노사발전재단 담당자 및 강사	대상자수	20명 이상

총사업비 (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A)	자차채부담금(B)	자차부담금
395,120,000	395,120,000	0	0

교부신청정보 (단위: 원)

예산액(A+B)	395,120,000	기교부신청금액	0	금회교부신청금액	0	예산잔액	395,120,000
신청일자	교부신청차수						
신청제목	대한 중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을 위한 1차 교부신청						

첨부파일

+ 파일추가 - 파일삭제 ↓ 다운로드

첨부파일명

파일 선택 노사관계전문가육성_교부신청서.hwp

저장

- 교부신청서 작성의 [교부신청정보 탭] 화면에서 교부신청금액에서 교부신청금액 입력과 신청사항 등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교부신청서작성

× 삭제 □ 목록

사업년도: 2016 사업명: 노사상생협력교육 지원사업 사업번호: B0071018000001

신청개요: **교부신청정보** 신청서제출

수행기관목록 (단위: 원)

순번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기관구분	수행역할	주사업자여	지분율	예산액(A)	기교부신청액(B)	금회교부신청
1	32000000	노사발견재단	정부투자기		Y	100	395,120,000	0	

신청자정보

• 교부신청금액은 국고보조잔액(예산잔액) 한도 내에서 입력 가능

□ 저장 × 삭제

교부신청금액	395,120,000 원		예산잔액	395,120,000
보조사업자계좌	11122343211	금융기관	산업은행	예금주명 노사발견재단
신청사항	해당금액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계좌검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좌검증 계좌검증상유무			

- 교부신청서 작성의 [신청서 제출 탭] 화면에서 교부신청서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부신청서작성

사업년도 2016 사업명 노사상생협력교육 지원사업 사업번호 B0071018000001

신청개요
교부신청정보
신청서제출

▶ **사업정보**

사업목적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고용노동 이슈에 관한 이해제고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사업기간	2017-10-02~2017-10-31
사업내용	대학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지원		

▶ **상위보조사업정보**

보조사업명	노사관계전문가육성 지원				
기관정보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자정보	성명	공실철
	기관구분	중앙부처		전화번호	0212125412
				이메일	bojotest@bojo.com

▶ **작성현황**

신청개요	교부신청정보
작성완료	작성완료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보고) (→ 지자체, 환경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다음사항을 검토·교부(보조금법 제17조)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국고집행능력* 등
 - 산업단지 조성시기 불투명, 분양·입주실적이 전무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중단
- e나라도움의 [내역사업교부 결정 및 통지 화면]에 [신청접수탭]에서 접수하고 [교부결정탭]에서 교부 요청한 항목에 대해 교부 결정 처리

[보조사업관리-교부관리-보조사업교부관리-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신청접수탭]

○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 Home > 보조사업관리 > 교부관리 >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연도: 2016 * 검색대상: 전체 일반자치단체
 세종시 공공/민간 교육자치단체 Q 검색

전체현황 **신청접수** 교부결정 교부결정동보 교부결정동보목록

① ②
반려처리 접수 엑셀

<input type="checkbox"/>	순번	내역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액누계	신청차수	금회신청금액	신청일자
<input type="checkbox"/>	1	노사관계전문교육성 지원	노사상생협력교육 지원사업	395,120,000	0	1	395,120,000	2016-10-18

Total: 1

② 수행기관별 교부신청 내역

순번	수행기관명	기관구분	주사업자여부	수행역할	보조금	교부결정액누계	금회신청금액
1	노사발전재단	정부투자기관/...	Y		395,120,000	0	395,120,000

- ① 교부신청 건에 대한 반려처리를 할 수 있는 버튼. 반려 처리 팝업이 호출된다.
- ② 교부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접수처리를 할 수 있는 버튼

[보조사업관리-교부관리-보조사업교부관리-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교부결정탭]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연도: 2016, 검색대상: 전체, 일반자치단체, 공공/민간, 교육자치단체

전체현황 | 신청접수 | **교부결정** | 교부결정정보 | 교부결정동보목록

교부신청접수(결정대상) 목록 단위: 원

승인	내역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액 누계	신청 차수	승인신청금액	신청일자	결정일자	접수일자
<input type="checkbox"/>	1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2016)_02	10,000,000	1,690,000	1	1,000,000	2016-10-17	2016-10-17
<input type="checkbox"/>	3	노사관계전문가육성 지원	노사상설협력교육 지원사업	395,120,000	0	1	395,120,000	2016-10-18	2016-10-18

Total: 2

수행기관별 교부신청접수 내역

승인	수행기관명	기관구분	주사업자여부	수령액합	보조금	교부결정액누계	승인신청금액
1	1	노사발전재단	정부투자기관/산	Y	10,000,000	1,690,000	1,000,000

- ① 신청접수를 취소 할 수 있는 버튼. 접수상태를 접수·취소시킨다.
- ② 교부결정대상을 교부신청 결정처리 할 수 있는 버튼. 교부신청 결정처리 팝업이 호출된다.

○ 결재가 완료된 후 교부 요청한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다.

[보조사업관리-교부관리-보조사업교부관리-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교부결정통보탭]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연도: 2016, 검색대상: 전체, 일반자치단체, 공공/민간, 교육자치단체

전체현황 | 신청접수 | 교부결정 | **교부결정정보** | 교부결정통보목록

교부결정(통보대상) 목록 단위: 원

승인	내역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액 누계	신청 차수	신청금액	신청일자	결정 순번	승인신청금액	결정일자	전송상태	전자결재
<input type="checkbox"/>	1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	10,000,000	1,690,000	1	1,000,000	2016-10-17	003	40,000	결재진행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2	노사관계전문가육성 지원	노사상설협력교육 지원사업	395,120,000	95,000,000	1	395,120,000	2016-10-18	001	95,000,000	교부결정	완료

Total: 2

수행기관별 교부결정 내역

승인	수행기관명	기관구분	주사업자여부	수령액합	보조금	교부결정액누계	신청금액	승인신청금액
1	1	노사발전재단	정부투자기관/산	Y	10,000,000	1,690,000	1,000,000	40,000

자치단체의 교부신청인 경우
자치단체별 교부신청 내역을 목록으로 조회한다.
승인취소: 결재완료 상태에서만 가능
통보: 결재완료 상태에서만 가능
일괄기안: 교부결정, 결재완료 상태에서 가능

- ① 결재 득한 건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버튼
- ② 교부결정처리 내역을 결재 요청하는 버튼
- ③ 결재상태가 승인된 건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내역을 통보처리하는 버튼
- ④ 전자결재의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클릭하면 전자결재 열람 팝업이 호출된다.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청 → 지자체)

-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21조제1항)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보조금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 작성
 - 유역·지방환경청은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보조금법 제21조제2항)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보조금법 시행령 제9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시(이하 법 제30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환경청 및 환경부, 보조금법 제25조)

○ 보고대상 및 기한

-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
- 작성시기 : 매월말 기준
- 제출기한 : **익월 5일까지(지자체→환경청→환경부)**
- 제출서식 :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서식 4)
 -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 기관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을 조치

□ 사업추진 완료 보고(지자체 → 환경청 및 환경부, 보조금법 제27조)

○ 보고대상 및 기한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종료사업
- 제출기한
 - 준공사업 및 폐지승인 사업 :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종료사업 : 종료 회계연도 기준 익년 1월 20일까지
 - ※ '20년도 이전 완료사업은 정산보고를 '21년 1분기내, '20년도 완료사업은 '21년 2분기내 정산보고를 완료
- 제출서식 : 회계연도 준공보고 및 정산보고서(서식 5, 서식 6)
 -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집행확인에 필요한 계약내역,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후 이를 보조사업자 및 환경부에 통보(보고)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 요구

검사 및 확인(환경부, 보조금법 제36조)

○ 현장 검사·확인

-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검사·확인 수행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시 또는 교부결정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 명령시
-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시

2. 보조금 집행점검·관리

사업추진 모니터링 강화(점검)

- 매월 추진실적 보고(지자체→환경청)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 공정률, 예산집행률 및 집행시기 등 현황 파악 강화
 - (제출일자) 지자체 익월 2일까지 → 환경청, 익월 5일까지 → 환경부
- ☞ 【서식 4】 사업추진 실적 보고 서식

□ 사업추진이 원활한 사업으로 예산조정(2회 이상)

- 폐수발생시기에 맞춰 적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 사업추진이 원활하여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 지원
 - 산업단지 조성시기 지연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증액재원을 마련

□ 선급금 지급을 상향 조정(70%)

- 관행상 회계부서에서 20~3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급률 상향 조정
 -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자금 요청시 검토 후 배정

□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 조기집행 유도를 위해 3월, 6월, 9월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IV. 향후 추진일정

- 시·도에서 시·군 계획을 취합, 유역·지방환경청 제출 : ~'21.2.26.
- 사업계획 타당성 1차 검토(선심, 환경청) : '21.3.2.~3.24.
 - 1차 검토(선심) 결과를 3월 24일까지 환경부(수질관리과)로 제출
 - ※ '20년도 실집행률 부진사업(50% 미만) 대상으로 추진상황 점검('21.2~3월) 후 그 결과를 '22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 사업계획 타당성 2차 검토[환경부(수질관리과)] : '21.3.25.~4.30.
- 국고지원 대상사업 선정[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 '21.5.3.~5.28.
- '22년도 예산편성 부처안 제출(환경부→기획재정부) : '21.5.31.

붙임 : [서식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서식 2]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용)

[서식 3] 예산신청 및 우선순위 등 검토 현황(환경청 작성용)

[서식 4] 사업추진실적 보고

[서식 5] 준공(회계년도말 실적) 보고

[서식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1】

사업명 : 00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속, 신규)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2021. 3.

시·도명		시·군·구명	
------	--	--------	--

작성자(시·군) : 담당과 과장 직명 성명 (인)

(TEL : HP :)

작성자(시·군) : 담당과 담당 직명 성명 (인)

(TEL : HP :)

확인자(시·도)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HP :)

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속, 신규)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작성

1. 사업개요

- 가. 위 치 :
- 나. 단지지정일 :
- 다. 단지조성계획

조 성 규 모 (m ²)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 타			

라. 단지분양계획

구 분	계	입주완료	건축중	계획중	주요업종	비고 [*]
분양면적(m ²)						
업체수(개소)						

※ 산업단지 내 1개사업장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75% 이상 또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총 유입오염부하량의 80% 이상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 (1) 최초 오·폐수 발생 예정일 :
- (2) 계획입주업체 입주완료(공장가동) 예정일 :
- (3) 분양계약서, 입주의향서 또는 MOU체결내역 등 입주내역 증빙자료 제출(미제출시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 신규사업은 미반영)

마. 오·폐수 발생(예정)량

구 분	계	생산시설 용지 ^{A)}		주거·학교 등 기타 용지 ^{B)}	비 고
		오수	폐수	오수	
오·폐수발생량 (톤/일)					
오·폐수발생 부하량 (kg/일)					

<작성요령>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자료를 근거로 작성

- A. 산업단지 중 생산시설용지의 오수 및 폐수발생량은 생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등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있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 B. 주거·학교 등 용지 오수량은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용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부하량을 기재

※ 신규사업은 생산시설용지,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도면 및 계획서 첨부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개요

(1) 처리시설 개요(계속 또는 신규로 추진하는 시설용량으로 작성)

시설용량 (m ³ /일)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공사기간)	처리공법	사업시행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실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용량으로만 작성(기본계획 승인된 전체 시설용량 및 사업비로는 작성 불가)	(100%)	(%)	(%)	(%)	(~)		

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일 :

※ 기본계획 승인서 사본 첨부(유역 및 지방환경청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승인일 :

(2) 시설용량 결정근거(원단위 적용근거 및 단계별 설치계획 포함)

(3) 설계 유입수질 및 예상방류수수질

※ 설계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산정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기재

(4)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

나. 추진경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등 주요 공정별 검토·승인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다. 인근 환경기초시설(하·폐수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톤/일)	가동(예정)일	사업지역과 이격거리(m)	비고
				* 지형상 특이사항

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1)

마. 사업의 필요성

(1)

바. 기대효과

(1)

사. 기타 법령·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1)

2. 연차별 설치계획(실제로 설치하는 시설용량으로만 작성)

(물량 : 대수, 톤,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현행	변경 요구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세 부 내 역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토목공사											
	-											
재 원 별	·건축공사											
	-											
	·기 타											
	·국 고 (%)											
재 원 별	·지방비 (%)											
	-시·도비											
	-시·군비											
	·차 입 (%)											
	·민 자 (%)											
·기 타 (%)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계 ” 란 만 기재
 3. A4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22년도 세부추진 계획

(단위 : 천원)

세부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부담비율
합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용역 ◦ 토목공사 <li style="padding-left: 20px;">- <li style="padding-left: 20px;">- ◦ 건축공사 <li style="padding-left: 20px;">- <li style="padding-left: 20px;">- ◦ 기 타 			

- 주) 1. 세부내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 기재
 2.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기재
 3. 산출내역에 물량, 단가, 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용지 보상비는 산업단지 개발비에 포함되므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 주) 토지매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기본계획 사전검토, 실시설계, 시설설치 승인, 착공, 준공 등 주요 공정별로 일정계획(실적 포함) 상세히 기재

5. 기타 사항

- 기타 각종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출서식 기재

【서식 4】

00년도 00월중 사업추진실적 보고

(부서명 : , 담당자 : , 연락처 : 000-0000-0000, 043-000-0000)

1. 사업명 :

2.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 일반현황

단지 지정일 (최초)	사업기간	조성면적 (km ²)	분양대상 면적(km ²)	단지조성 착공연월	분양일 (예정)
0000.00.00	0000.00 ~ 0000.00	1,200	1,000	0000.00.00	0000.00.00

○ 단지조성 현황

구분	단지 조성현황				분양현황		
	계획		시공		목표 달성 (%) (b/a)	실제 분양 면적 (km ²)	분양대상 면적대비 실분양율(%)
	조성 면적 (km ²) (누계) (a)	공정률 (%)	조성 면적 (km ²) (누계) (b)	공정률 (%)			
1월	-	-	-	-	-	-	-
2월	4	0.3	2	0.2	50.0	-	-
3월	100	8.3	100	8.3	100	-	-
4월	200	16.7	200	16.7	100	-	-
5월	500	41.7	350	29.2	70.0	-	-
6월	800	66.7	450	37.5	56.3	-	-
7월	800	66.7	450	37.5	56.3	2.5	0.3
8월	900	75.0	500	41.7	55.6	28.8	2.9
9월	1,000	83.3					
10월	1,100	91.7					
11월	1,200	100					
12월	-	-					

○ 단지조성 및 분양률 저조 사유

구분	지연사유	개선대책
단지조성	○(휴먼명조 13) - (휴먼명조 13) * (중고덕 12)	○(휴먼명조 13) - (휴먼명조 13) * (중고덕 12)
분양율	○(휴먼명조 13) - (휴먼명조 13) * (중고덕 12)	○(휴먼명조 13) - (휴먼명조 13) * (중고덕 12)

○ 입주업체 현황

- 입주예정 업체수 : 개소('00.00월 현재 가동업체수 : 개소)
- 입주업체 및 오·폐수 발생 현황

(개소, m³/일)

구분	업체 수					분양률 (%)	오·폐수 발생량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량
	계	분양	공사	가동	기타			
'00.0월								
'00.0월								
'00.0월								
'00.0월								
'00.0월								
최 중								

※ 실적보고시점(월) 이전시기는 업체 수 및 오·폐수 발생량 등 '실적'으로 기재하고, 이후시기는 '예상량'으로 기재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시설용량 (톤/일)	착공일	준공일	공정율(%)	기본계획승인일

※ 단계별 추진사업은 실제 공사하는 현 단계에 대해서만 작성

4. 사업비 집행실적

○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용량 (㎡/일)	공사기간	소요사업비(백만원)						
		재원별	계	'18까지	'19	'20	'21	'22이후
		합계						
		국고						
		기타						

○ 선급금 지급율 : 00.0%

○ '21년도 00월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예산집행 계획			'21년 00월까지 누계 집행액 (실집행액 기준)			실집행률 (%, b/a)
	계 (a)	전년 이월	본 예산	계	전년 이월	본 예산	계 (b)	전년 이월	본 예산	
재원별	계 (100%)									
	국고 (%)									
	원인자 (%)									

4.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그간 추진실적

- 00년 00월 :

○ 향후 추진계획

- 00년 00월 :

5.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대책(구체적으로 작성)

※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50%이하인 경우 작성

○ 부진사유 :

○ 대책 :

【서식 5】

() **설치사업 준공(실적)보고**

1. 사업개요

소재지	시설규모 (m ² /일)	처리방식	공사기간	시운전기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사업비 집행(원인행위) 금액			불용액
		계	집행액	이월액	
계					
국고					
지방비					

* 국고보조비율 : %

3. 사업비 집행 (원인행위)금액 세부내역

구분	내역	규격	수량	단위	사업비(원)
계					
도급	소계				
	· 토목				
	· 건축				
	· 기계				
관급	소계				
	· 전기 등				
	· 레미콘				
	· 철근				
설계감리비등	소계				
	· 시멘트 등				
	· 설계용역비				
	· 감리비				
	· 기타 등				

【서식 6】

00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명(①) :
- 사업기간(②) : '00.00. ~ '00.00.(준공일 '00.00.00)
- 시행자(③) :

사업구분	사업규모 (m ³ /일, km등)	처리공법	총사업비(원)			제출자료 (승인문서)
			계	국고보조	원인가등	
④	⑤	⑥	⑦	⑦ 00%	⑦ 00%	첨부1

- ① 지자체명 단지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1단계) 등으로 작성
- ② 착공월에서 준공월 기준으로 작성, 준공일은 최종계약서(또는 준공조서)의 년,월,일까지 표기
-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작성
- ④ 신설, 증설, 총인, 고도, 연계처리 등으로 작성
- ⑤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 시설용량 작성, 관로사업인 경우 관로연장 작성
- ⑥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 공법명을 적고 그 외 사업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
- ⑦ 확정된 총사업비(실시설계 검토 승인사업비) 및 기준보조율(%) 작성
-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승인한 실시설계 승인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두 사업 이상 통합발주 되었어도 정산보고서는 각 사업별로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예산교부 상세내역

(단위 : 원)

국고			제출자료 (교부통지서)
교부통지서	교부일	국고	
계		000,000,000	
00000-0000호	'00.00.00	000,000,000	첨부2-1
00000-0000호	'00.00.00	000,000,000	첨부2-2
...

※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승인한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항목별 집행내역

○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고
집행액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금액	채주	제출자료
집행내역 총계					
1. 공사비 소계			000,000,000		
도급공사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첨부3-1
도급공사비	0000-00-00	1차 준공금	첨부3-2
...
전기공사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	
관급자재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	
폐기물처리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	
2. 설계비 소계			000,000,000		
설계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	
3. 감리비 소계			000,000,000		
감리비	0000-00-00	1차 선금	000,000,000	(주)00	
...	
4. 시설부대비 소계			000,000,000		
시설부대비	0000-00-00	00월 전기요금	000,000,000	(주)00	
...	

※ 각 항목별 지출결의서^{주1)} 및 증빙자료^{주2)}를 첨부하여야 함

주1) 지출결의서 : 회계부서 담당자가 “서명날인” 한 지출결의서 또는 “원본대조필” 표기된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등) 전산자료

주2)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집행금액과 일치하는 자료

- 예시) - 공사 및 용역비 : 최종변경계약서 또는 준공정산합의서 등
 - 관급자재비 : 계약서 또는 물품검수조서, 물품납입영수증 등
 - 수수료(전기요금, 한전부담금 등) :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 등
 - 출장여비 : 출장명령부, 여비지급명세서, 감독자선임보고서(감독자명령부) 등

□ 항목별 계약내역

(단위 : 원)

구분	계약일	차수	금액	기간	제출자료			
					계약서 ①	검수조서 ②	내역서 ③	관련공문 ④
00 공사	0000-00-00	최초	000,000,000	' 00.00.00~ ' 00.00.00			첨부6-1	첨부7-1
	...	1차변경
		2차변경						
		...			첨부4-1			
		준공				첨부5-1		
00 설계		최초						
		1차변경						
		2차변경						
		...			첨부4-2			
		준공				첨부5-2		
00 용역		최초						
		1차변경						
		...			첨부4-3			
		준공					첨부5-3	

- ① 지출결의서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계약서(첨부4)
 - ※ 준공정산금이 최종변경 계약금액과 상이할 경우 정산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준공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 준공검수조서(첨부5)
- ③ 변경계약 시 설계변경 내역서(첨부6)
- ④ 변경계약 시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문서(첨부7)
 -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 준공 사업에 한함)

□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원)

항목	증감액	주요변경현황	제출자료
00공사 1차변경	000,000	변경사유 및 물량 등	첨부8-1
...

※ 설계변경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실정보고서 및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정산 검토 요청(안)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①	집행액②			국고반납액⑤ (=①-③)	비고
		계	정산인정③	정산제외④		
계						
국고 (00%)						
원인자등 (00%)						

①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총계 기재

□ 정산제외 세부내역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제외사유	제출자료
계		000,000,000	-	
(예시)공사비	00설비	000,000,000	실사실계 검토 시 제외시설로 명기된 항목	첨부9-1
(예시)공사비	00설비	000,000,000	금회 사업과 관련없는 시설 추가	첨부9-2
(예시)공사비	00설비	000,000,000	기존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	첨부9-3
...	

※ 집행액 산출근거(관련문서,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연락처
작성자				
확인자				